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된 사항을 변경·이동신고하려는 경우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본증명서는 재외국민등록 신청 또는 등록된 사항의 변경·이동신고를 받은 공관의 장이 신청인 또는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」이 개정(대통령령 제35701호, 2025. 8. 12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, 재외국민등록신청서 서식 및 재외국민등록변경·이동 신고서 서식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5. 28. ~ 7. 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외교부령 제 호

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본인정보 제공요구 및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위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 항목의 행정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,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본인에 대한 해당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- *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신청인이 직접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* 대리신청의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리인이 직접 신청인의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본인정보보유기관장 귀하

유의사항

1.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등록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, 우편, 모사전송, 재외동포365민원포털(g4k.go.kr)를 통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.
2. 등록대상자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, 직계혈족,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등록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인 및 등록대상자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및 대리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제시해야 합니다.
3. 대리신청을 위하여 등록대상자 본인은 아래 '위임장' 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. 출입국 사실 등(여권, 주민등록표 초본,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, 병적증명서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, 기본증명서는 본인정보 제공요구 동의와 관계없이 대리인이 직접 신청인의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4. 미성년자의 등록신청은 대리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,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첨부하여 직접 할 수 있습니다.
5. 체류국 최초 입국일은 체류국 입국 후 90일을 초과하여 다른 국가에서 체류한 경우에는 재입국일을 의미합니다.
6.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등록공관 담당자에게, 주소나 거소가 변경되어 등록공관이 변경되면 새로 등록할 공관의 담당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.
7.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자가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일부터 90일 이내에 귀국신고를 하여야 하며, 재외동포청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 또는 재외동포365민원포털(g4k.go.kr)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위임장

본인은 「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본인의 재외국민등록의 신청을 위한 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.

위임한 사람(신청인)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위임받은 사람(대리인)

성명
생년월일
신청인과의 관계

안내 사항

1. 재외국민등록의 변경신고 시에는 담당공무원이 국내 행정정보를 통하여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수리하며, 영문 성명의 변경 시에는 체류국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2. 재외국민등록 변경·이동 신고는 직접 방문, 우편, 모사전송, 전자문서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3. 재외국민등록자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, 직계혈족,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재외국민등록자의 위임을 받아 신고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인 및 재외국민등록자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.
4. 대리신고를 위하여 재외국민등록자 본인은 아래 '위임장' 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. 출입국 사실 등(여권, 주민등록초본,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, 병적증명서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, 기본증명서는 본인정보 제공요구 동의와 관계없이 대리인이 직접 신고인의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위임장

본인은 「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」 제7조제2항에 따라 본인의 재외국민등록의 변경신고 또는 이동신고를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.

년 월 일

위임한 사람(신고인)

(서명 또는 인)

위임받은 사람(대리인)

성명

생년월일

신고인과의 관계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